



중탕 파우치, 분리배출 표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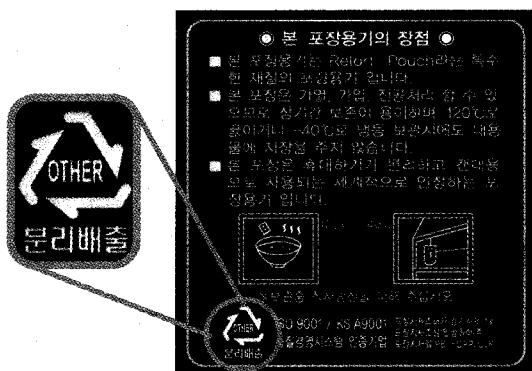
- 미표시 · 허위표시, 과태료 3백만원 -

양록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약포장재, 즉 중탕파우치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가 의무화됨으로서 농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는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바이알·앰플, PTP포장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 △ 음식료품류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함) △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 등이다.

이외에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제는 전자제품의 완충제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제, 각종 전지류, 차량 타이어, 각종 전자제품, 형광등 및 그 외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제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가 포함된다.

그러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



품은 제외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사용하는 중탕 파우치에는 반드시 분리배출 표시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리배출표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규정 준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농가에서는 중탕의 포장 등에 있어 이러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재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양특**